

#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| 일반공급 안내문

## ■ 일반공급(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)

### ■ 신청자격

1	원주시, 강원특별자치도	2	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	3	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
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

### 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

구분	순위	청약관련 신청자격
민영주택	1순위	·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(가점제 접수)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
	2순위	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
청약통장 기준사항		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: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(주택청약종합저축)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(전용면적 기준) 변경한 분 신청 요건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(단,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)

### ■ 가점제 적용기준

※ 2년 내 가점제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가점제 청약 불가 / 추첨제로 청약 가능

구분	내용													
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	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. ·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무주택 산정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소유 경험 없음</td> <td>만 30세 이전 혼인</td> <td>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</td> </tr> <tr> <td>만 30세 후 혼인</td> <td>만 30세가 된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주택소유 경험 있음</td> <td>만 30세 이전 혼인</td> <td>혼인신고일과 주택처분일 중 모집공고일에 가까운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</td> </tr> <tr> <td>만 30세 후 혼인</td> <td>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처분일 중 모집공고일과 가까운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무주택 산정기간	주택소유 경험 없음	만 30세 이전 혼인	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	만 30세 후 혼인	만 30세가 된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주택소유 경험 있음	만 30세 이전 혼인	혼인신고일과 주택처분일 중 모집공고일에 가까운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만 30세 후 혼인	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처분일 중 모집공고일과 가까운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
	구분	무주택 산정기간												
	주택소유 경험 없음	만 30세 이전 혼인	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											
		만 30세 후 혼인	만 30세가 된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										
주택소유 경험 있음	만 30세 이전 혼인	혼인신고일과 주택처분일 중 모집공고일에 가까운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											
	만 30세 후 혼인	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처분일 중 모집공고일과 가까운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											
·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.														
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	배우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미혼자녀</td> <td>만 30세 미만</td> <td>모집공고일 현재 등재</td> <td rowspan="2">미혼으로 한정 (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)</td> </tr> <tr> <td>만 30세 후</td> <td>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</td> </tr> <tr> <td>직계존속</td> <td>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</td> <td>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(분리세대 시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세대주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준	비고	미혼자녀	만 30세 미만	모집공고일 현재 등재	미혼으로 한정 (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)	만 30세 후	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	직계존속	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	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(분리세대 시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세대주)
	구분	기준	비고											
	미혼자녀	만 30세 미만	모집공고일 현재 등재	미혼으로 한정 (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)										
만 30세 후		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												
직계존속	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	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(분리세대 시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세대주)												
직계존속	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	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(분리세대 시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세대주)												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자료이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'입주자 모집공고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| 일반공급 배점표

## ■가점제 산정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	0	8년 이상~9년 미만	18	
		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~2년 미만	4	10년 이상~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~3년 미만	6	11년 이상~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~4년 미만	8	12년 이상~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~5년 미만	10	13년 이상~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~6년 미만	12	14년 이상~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~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		7년 이상~8년 미만	16			
② 부양가족수 (청약신청자 본인 제외)	35	0명	5	4명	25	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본인	6개월 미만	1	8년 이상~9년 미만	10
			6개월 이상~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11
			1년 이상~2년 미만	3	10년 이상~11년 미만	12
			2년 이상~3년 미만	4	11년 이상~12년 미만	13
			3년 이상~4년 미만	5	12년 이상~13년 미만	14
			4년 이상~5년 미만	6	13년 이상~14년 미만	15
			5년 이상~6년 미만	7	14년 이상~15년 미만	16
			6년 이상~7년 미만	8	15년 이상	17
			7년 이상~8년 미만	9		
	배우자	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	0	1년 이상~2년 미만	2	
		1년 미만	1	2년 이상	3	

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
※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-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

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50% 적용)	점수
1년 미만	6개월 미만	1점
1년 이상~2년 미만	6개월 이상~1년 미만	2점
2년 이상	1년 이상	3점

-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%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,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
-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